

의안번호	2203431
의 퇴 인	이만희의원
회 답 일	2024. 10. 7.
추 계 번호	24B337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9. “<u>농산업</u>”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과 다음 각 목의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가. <u>농산물 가공업</u>: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7호에 따른 식품, 다른 산업의 원료·재료나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산업 나. <u>농산물 유통업</u>: 농산물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다. <u>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u>: 농업·농촌 관련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라. <u>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u>: 농업 및 관련 활동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비료·사료·동물약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산업 마. <u>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u> ※ 농산업을 새로 정의하고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기술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해외투자·수출진흥 등의 지원을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의무규정
2	안 제34조 신설 (농산업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식품산업을 포함한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u>농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u> 을 세우고 <u>시행</u> 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48조의2 신설(농촌구조전환 우선지역)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u>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u>할 수 있음(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에 필요한 시책</u>을 세우고 <u>시행</u>하여야 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3조(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34조 신설(농산업의 육성)	
3	안 제48조의2 신설(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2. 상세 사유

가. 농산업 정의(안 제3조), 농산업의 육성(안 제34조 신설)

□ 현행법은 농업을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현행법 상 농업의 범위

농작물재배업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풋거름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축산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임업	영림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업을 포함) 및 임산물 생산·채취업

자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발췌·정리

□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농업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외 종자·비료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신설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을 통해 현행법령 내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육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농산업’의 범위 및 지원 방식에 관한 규정 미비로 정책 범위상 혼란 발생 및 해당 산업군 대상 체계적 지원이 어려움

* 2023~2027 농정과제 실천 계획 내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과제 포함

□ 개정안에 따라 ‘농산업’의 정의를 ‘농업’ 및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산업 육성 시책의 시행을 의무화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연구 및 기술개발, 국제협력·해외투자·수출진흥 등을 ‘관련 산업’까지 확대하게 되어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¹⁾

○ (관련 산업) 농산물 가공업, 농산물 유통업, 농업·농촌 관련 서비스업, 농업 관련 투입재 산업, 그 밖에 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 (안 제3조제9호가목부터 마목까지)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시점에서는 농산업 내 구체적인 산업분류 및 지원사업 등이 특정되지 않았고, 산업유형별 지원 규모를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나.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안 제48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인구 유입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인구감소지역²⁾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시점에서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지정 수, 해당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인구 유입에 관한 구체

1) 한편, 농업인에 대한 혜택은 [참고자료 1] 농업인 복지, 농업 관련 보조·용자지원, 세제 등 혜택 참고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참고자료 2] 인구감소지역 현황 참고

적인 시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농업인 복지, 농업 관련 보조·융자지원, 세제 등 혜택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 국민연금·건강보험·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업 관련 보조(직불제 포함)·융자사업 신청 지원, 각종 세제 혜택 등 부여

※ 다만, 사업별, 복지·세제별로 지원 대상자 상세 요건(농업경영체 등록 등) 상이하며, 이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농업인 수당 등이 있음

1. 주요 복지 혜택

구분	대상	지원내용	비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촌 또는 준농촌 거주 건강보험 지역 가입 농업인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월 최대 28% 내에서 차등지원 *농어촌지역 거주자에 대해 보험료 22% 별도경감(보건복지부)	국고 100% ('04 ~)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 또는 지역임의계속 가입 농업인	- 기존소득금액(103만원) 이하: 보험료의 50%(정률지원) - 기존소득금액(103만원) 초과: 월 46,350원(정액지원)	국고 100% ('95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농식품계열 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 본인	- 당해 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생활비, 기숙사비 제외) - 졸업 후 융자금 상환 * '18.2학기 이후 대출기간: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16년부터 회수금 및 이월수입 등 활용(국고출연금 없음) ('94 ~)
영농도우미 지원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 또는 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1일 영농도우미 인건비(84천원)의 70%인 58.8천원 국고지원(30% 자부담)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국고 70% 자부담 30% ('06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대상 국고지원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보험료 50% 지원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등)의 경우 70% 지원	국고 50% 70%(영세농)

2. 농업 관련 주요 보조·융자 지원(예시)

구분	지원 자격	내용	비고
(공통) 기본형 공익직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농업법인	- 소농직불 : 130만원/농가 - 면적직불 : 농지의 논/밭, 진흥/비진흥을 구분하여 최소 100 만 원/ha 이상 지급	국고 100%
(농촌, 공동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시행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이며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	- 영농경력에 따라 영농정착 지원금을 차등 지급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국고 70%, 지자체 30%
(원예작물, 유통)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 (시설보급)	채소·화훼·특용작물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시설원에 분야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설치 지원 *개소당 200백만원(국고) 이내 지원	국고 25%, 지자체 30%, 융자 25% 자부담 20%
(원예작물, 유통) 채소가격안정지원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 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 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인 등에게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가격차보전·산지 폐기 비용·출하장려금 등 지원	국고 30%, 지자체 30%, 농협 20%, 자부담 20%
(식품)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 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에 대해 위생시설 보완 지원 *개소당 300백만원(국고+지자체) 이내 지원	국고 30%, 지자체 20%, 자부담 50%
(농생명 산업) 곤충사육시설 현대화	농업인, 농업법인 등	-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관련 기자재의 신규 구비 및 교체 등 지원 *개소당 300백만원(융자+자부담) 이내 지원	융자 80%, 자부담 20%
(탄소중립, 기후변화) 유기농업자재지원 (유기농업자재 등)	전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농업법인 등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등 구입비 일부 지원	국고 20%, 지자체 30%, 자부담 50%

3. 주요 세제 혜택

구분	종류	주요 내용(해당법령)	비고 (감면시한)
국세	양도 소득세	▫ 8년 이상(경영이양직불대상 농지의 경우 3년 이상*) 자경 농지 양 도시 양도소득세 면제(조특법 §69)	계속 '26년*
	부가 가치세	▫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특법 §105①5,6)	'25년
		▫ 농·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105의2)	계속
		▫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 가가치세 면제(조특법 §106②9)	'25년
		▫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 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조특법 §106의2)	'26년
	농특세	▫ 농업인의 농지 등에 대한 국세·지방세 면제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4)	계속
지방세	취득세	▫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6①)	'26년
		▫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지특법 §6④)	'24년
	재산세	▫ 농지연금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지 특법 §35의2)	'24년
	주민세	▫ 농어업인이 영농, 가축사육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 주민세 재산분 종업원분 면제(지특법 §10②)	'24년

* 농업분야에 적용되는 조세특례 중, 적용 대상이 「농업식품기본법」 상의 농업인,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
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농지법」 상 농업인)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한정

[참고자료 2] 인구감소지역 현황

(행정안전부 고시)³⁾

□ 인구감소지역

구분	인구감소지역(89개)
부산 (총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총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총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총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총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총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총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총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총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총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총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3)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 -15호